

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신한라이프생명보험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6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징금 900만원 부과
직원	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
보험설계사	업무정지 30일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: 1명 과태료 2,640만원 부과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- 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- 신한라이프생명보험(주)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.1.19. ㉠종신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, 보험계약자 乙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총 370,000원의 특별이익(보험료 대납)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8조 제4호

나.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허위·가공의 보험계약 모집)

-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- 신한라이프생명보험(주)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2.3.30.~2022.8.29.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丁 등 13명의 명의로 ㉠종신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6호